

창설환지 취득

[] 신청서

[]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 120일	
동·리	지번(위치)	지목	면적(㎡)	㎡당 단가(원)	금액(원)	사용용도
신청(동의)인	상호 또는 명칭			전화번호		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(동의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동의)인 성명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

첨부서류	사용계획서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

창설환지 취득 신청(동의) 안내

제출 및 처리기관	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농어촌공사, 토지 소유자
근거 법규	○ 「농어촌정비법」 제34조(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. 1.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2. 미곡종합처리장,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.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. 다만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. ③ ~ ⑥ (생략)

처리절차

이 신청(동의)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